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尹, 3차출석 요구에 거부…공수처, 범죄 의심·소환 불응 판단
‘내란 수사권한’ 따라 영장 결과 갈릴 듯…경호처 충돌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

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이 공수처 헌판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리’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

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각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

법원 의견서 제출…김용일·윤갑근 선임계 내고 본격 변호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만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삼아에 청구했다”며 이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현재 “韓총리, 탄핵 의결 후 별도 결정 전까지는 직무정지”

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에 원칙적 입장…“재판부 판단할 문제”

‘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엔 “현 상황 고려해 속도 내는 중”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천재현 현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회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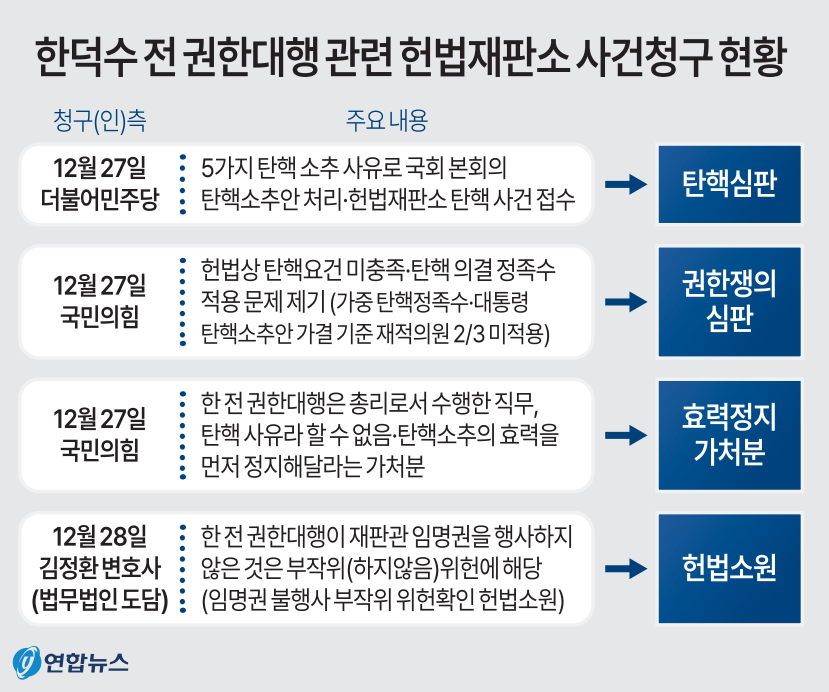
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져분도 신청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이전 현재 부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현재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 공보관은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가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



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했다.

현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과정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서 사건의 처리 순서,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보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

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정동 대통령 안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공조본, ‘내란 혐의’尹 수색영장도 청구

공조수사본부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일단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발부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연합뉴스

경찰, 한 총리 2차 출석요구…계엄 인지도점 등 확인 전망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지난 30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된다”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는 한 권한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12월 30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